

식품산업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연구소는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설 식품산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주요활동)
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식품개발 및 지도
- ② 식품영양성분 분석
- ③ 임상영양 조사 및 상담
- ④ 메뉴 및 조리기술 개발
- ⑤ 제과제빵 기술 개발
- ⑥ 지역 특산식품 육성지원
- ⑦ 식품용기 및 포장디자인
- ⑧ 관련 학술연구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배포
- ⑨ 창업 및 경영지도, 경영진단, 기술지도
- ⑩ 연구지 발간 및 연구발표, 세미나 및 초청강연회 개최
- ⑪ 외부기관의 위탁교육 및 연수
- ⑫ 외부기관의 위탁연구와 각종 실험 및 조사업무
- ⑬ 외부기관에서 위탁된 설계 및 안전진단
- ⑭ 산학협동에 의한 각종 프로젝트 연구
- ⑮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5조 (편성)

본 연구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.

- ① 식품가공 및 개발팀
- ② 임상영양 조사 및 상담팀
- ③ 조리 및 메뉴 컨설팅팀
- ④ 출판 및 디자인팀

제6조 (소장)

-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실장)

- ① 연구소에는 실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2012.07.16>
- ② 실장은 연구소 Lab.의 사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 (연구원)

- ① 연구업무를 전담할 연구원은 해당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본교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- ②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두어 연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③ 1년에 2회 이상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한다.

제9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4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괄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2. 연구소의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 3. 관, 산, 학, 연 기술협력지원(외부전공자)
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총무 및 간사)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장 예 산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1조 (재정)

- ① 연구소의 수입은 각종 연구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연구소의 지출은 운영비, 연구용 기기 구입 등 연구소의 능력향상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연구용역)

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용역의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연구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 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.

제13조 (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)

당해 연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 연도 말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(회계 연도)

본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로 한다.

제15조 (연구소 기자재 구입 및 운용)

연구소 기자재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구입하고 연구소전용 실험실습실에 비치하고 운용한다.

제16조 (운영세칙)

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식품산업연구소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자동 폐기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식품산업연구소의 조직

